#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4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이해민 · 김재원 · 강경숙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민홍철 · 서왕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 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 법률 제 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제23조제4항 단서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에는 미리 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그 밖에"를 "제공의 대가,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의3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32조제6항제9호의2"를 "제32조제7항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32조제6항제9호의2"를 "제32조제6항제9호의2"를 "제32조제7항제9호의2"로 한다.

제52조제2항제5호 중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2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을 "제32조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제7항 또는 제10항"을 "제8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 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	의 행위규칙) ①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
	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
	여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
	하게 유도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보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	<b>4</b>
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	
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	
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u>제3</u> 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신 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저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생 략)

④ ~ ① (생 략)

제32조
<u>제7항</u>
⑤ ~ ⑦ (현행과 같음)
베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
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공에 따른 대가의 내용을 고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상
제공의 기준 및 고지 내용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u>
1항까지와 같음)

만 이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제32조제7항-----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 ⑤ (생 략)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u>(6)</u> -----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 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제32조제8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 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 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 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 (2) -----정보제공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

1. · 2.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3. 정보를	활용하는	- 신용	정보회
사등이니	ナ 정보횥	<b>上용의</b>	목적별
로 정보	활용 동	의 사형	항을 구
분하여	신용정보	L주체기	<b>가</b> 별
적으로	해당 동	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조	∄32조×	제 <u>4항</u> 의
선택적	동의사형	}으로	한정한
다)			

#### ③ ~ ⑤ (생 략)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 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 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 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생략)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

3
<u>제32조제5항</u>
_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①
•
4 (5151) 1 -1 6)
1. (현행과 같음)
2

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u>그 밖</u>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 ② · ③ (생 략)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u>제</u> 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 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u>/1  0</u>
이 네코 그 버스
<u>의 대가, 그 밖에</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3.41)
제외) <u>제</u>
99 구 케O孝l
32조제8항
<u>.</u>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M425 72 73 6 7 7 7 7 7 0 U

있다.

- 1. (생략)
-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 3. (생략)

② ~ ⑨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의4. (생략)
- 5. <u>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u>(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32조제7항제9호의2</u>
1의3. <u>제32조제7항제9호의2</u>
1의4.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1. ~ 4의4. (현행과 같음)
5. <u>제32</u> 조제5항 또는 제6항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의2. ~ 8.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의2. (생략)
-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의2. ~ 18. (생략)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략)
- 10. 제32조제3항 · <u>제7항</u> 또는 <u>제10항</u>(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1. 12. (생략)
- ⑥ ⑦ (생 략)

5의2. ~ 8. (현행과 같음) ③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9항 또는 제10항
0. 세32도세3 중 그는 세10 중
6의2. ~ 1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u>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8항 또는 제</u>
<u> 11항</u>
11.8
11.・1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